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인가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10일
신청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법인명	전화번호		
	주소			
시설 개요	명칭	시설 종류		
	소재지			
	시설장 성명	생년월일(남/녀)		
	운영 예정 연월일	입소정원		
시설설비				
종사자	총	명(시설장	명, 상담원	명, 그 밖의 인원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설치인가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그리고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법인의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임대차계약서(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3. 보호시설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건축물대장 등본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4. 보호시설의 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5. 보호시설 종사자의 명단과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6. 보호시설 운영계획서 및 수입·지출예산서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건축물대장 등본	

처리절차

